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53호

2017. 6. 26.

건명	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도로교통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안연월일	2017. 6. 12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17. 6. 12.

## 보 고 내 용

### □ 제안이유

-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용하도록 하는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, 중앙부처 위임조례 규제완화 통보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및 위임근거 법령과 조항을 변경함(안 제명, 안 제1조)
-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)
- 다른 조례의 개정
  - 「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함(안 제14조제3호의2)

### □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14조제3항, 제15조제4항,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